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 |
|----------|------|
| 의안 번호 | 1687 |
|----------|------|

2020. 9.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0. 7. 13.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69조)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 외에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 |

-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2019) 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개정을 권고한 가운데(총 96개 조항, 조례57개·규칙5개),

※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 | I 차별 및 인권침해 | II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 III 시민참여보장 |
|---------------|--|--|---|
| 개선점 | 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 |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 참여(참정)권, 평등권 |
| 인권 침해 (제한) 분야 |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면제)의 올바른 적용여부) 5. 반환권 제약 (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 8.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이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징수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구제절차는 규정되지 않아서 구제권 제약 소지가 있는 조항에,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 규정하여 시민의 권리 구제를 도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 조례에서 과태료 징수절차의 근거가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붙임), 과태료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보다는 ‘이의제기’로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함.
- 참고로, 이 조례의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과태료는 ‘허가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의 토지 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 ‘개발행위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 등에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붙임), 최근 3년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없음.

| | |
|-----|------------------------|
| 담당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
| 연락처 | 02-2180-8206 |
| 이메일 | rienrien@seoul.go.kr |

〈붙임〉 과태료 관련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가결과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1호 | 800만원 |
| 2. 법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44조 제2항제1호 | 200만원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2호 | 600만원 |
| 4. 법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3호 | 500만원 |
| 5.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4호 | 500만원 |
| 6.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 300만원 |